

	규정 기숙사 운영 규정	문서번호	TWP-C108
		제정일자	2008. 06. 01.
		개정일자	2025. 09. 29.
		개정번호	5
		페이지	1/8

작성부서	기획예산처	제정일자	1997. 04. 01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승 인
직 책	담당	기획예산처장	교무학생처장	산학입학처장		사무처장	총 장
서 명							
일 자		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C108
		제정일자	2008. 06. 01.
	기숙사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25. 09. 29.
		개정번호	5

개정이력		
개정 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0	2008. 06. 01.	- 동원드림하우스 운영규정 제정
1	2015. 04. 27.	- 학칙 제56조 2에 의거 학과를 전공으로, 학과장을 주임교수로 변경
2	2020. 10. 08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 4조 2항 기숙사 시설물 사용 기준 명시 - 제 9조 위원회 기능 현행 업무 절차대로 변경 - 제 12조 예산 및 결산 현행 업무 절차 및 조직도와 동일하게 수정 - 제 14조 사감, 부사감 직무사항 추가 및 신설 - 제 16조 입사생 선발기준 우선선발 대상자 현 실정에 맞게 수정 -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외박/외출 신청 온라인으로 변경 - 기타 용어정리
3	2022. 04. 27	- 제15조(입사자격) 교직원에 한하여 공실이 있을 경우 입실 할 수 있음.
4	2024. 06. 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숙사 운영 효율성 제고 위해 부관장 추가 - 외국인 유학생의 입사 및 퇴사에 관한 근거 마련 - 우선선발 기준 변경
5	2025. 09. 2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영규정 제목 변경 - 기숙사 명칭 추가 - 기숙사 업무 효율성 위해 생활수칙 기준 변경 - 기숙사 운영 효율성 제고 위해 부사감 추가 - 휴박 신청 요일 추가 - 기숙사 반입금지 품목 추가

	규정	문서번호	TWP-C108
		제정일자	2008. 06. 01.
	기숙사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25. 09. 29.
		개정번호	5
		페이지	3/8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학생의 기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한 인성함양과 학생의 면학을 위하여 설치된 학생기숙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 <개정 2020.10.08., 2025.09.29>

제2조(명칭) 기숙사는 2동으로 구성되며, 각 동의 명칭은 동원드림하우스와 글로벌하우스(이하 “기숙사”라 한다)로 한다. <개정 2025.09.29>

제3조(개사기간) 기숙사 개사기간은 매학기 학사일정상 수업기간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4조(이용제한) ① 폐사기간에 기숙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숙사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0.08>

② 이 대학 학생 이외의 단체로서 기숙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물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 할 수 있으며, 사용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0.08>

제5조(사생활동)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을 도모하며 학문탐구와 인격도약을 위한 기숙사 입사생(이하 “사생”이라 한다)의 활동은 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.<개정 2020.10.08>
② <삭제 2020.10.08>

제6조(생활수칙) 사감은 기숙사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 기숙사 생활수칙을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5.09.29>

제2장 기숙사 운영위원회

제7조(설치) 기숙사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8조(구성) <삭제 2020.10.08>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부관장 및 이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.

	규정	문서번호	TWP-C108
		제정일자	2008. 06. 01.
	기숙사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25. 09. 29.
		개정번호	5
		페이지	4/8

<개정 2024.06.10.>
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사감으로 한다.
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0.10.08>

1. <삭제 2020.10.08>
2. <삭제 2020.10.08>
3. 기숙사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4. <삭제 2025.09.29>
5.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
6. 그 밖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3장 회계연도와 예산결산

제11조(회계년도)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20.10.08>

제12조(예산 및 결산) ① 관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세입·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에 제출한다. <개정 2020.10.08., 2024.06.10.>

② <삭제 2020.10.08>

제4장 조직

제13조(조직) ① 기숙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명, 부관장 1명, 사감 및 부사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. <개정 2020.10.08., 2024.06.10., 2025.09.29>

② 관장과 부관장은 이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4.06.10.>

제14조(직무) ①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, 기숙사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 <개정 2024.06.10., 2025.09.29>

② 부관장은 관장을 보좌하고 사감을 지휘·감독하며, 사생을 지도·감독한다. <개정

	규정	문서번호	TWP-C108
		제정일자	2008. 06. 01.
	기숙사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25. 09. 29.
		개정번호	5

2020.10.08., 2024.06.10.>

③ 사감 및 부사감은 관장 및 부관장을 보좌하여 기숙사의 관리 · 운영에 관한 실무를 수행하고 사생을 지도 · 감독한다. <신설 2020.10.08., 개정 2024.06.10., 2025.09.29>

제5장 입사 및 퇴사

제15조(입사자격) ①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신입생, 재학생, 외국인 유학생과 총장이 인정한 자로 한다. <신설 2020.10.08., 2024.06.10.>

② 공실이 있는 경우 교직원에 한하여 대학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학기 단위 이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입사할 수 있다.<개정 2022.04.27.>

제16조(입사생 선발기준)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.

1. 신입생은 입학성적,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.
2.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, 별점,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선발한다.
3.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류원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. <신설 2024.06.10.>
4. 혼자 거동이 가능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우선 선발한다. <개정 2020.10.08., 2024.06.10.>
5. 4호 이 외 우선 선발이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우선 선발할 수 있다. <신설 2024.06.10.>

제17조(입사자격의 제한)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
1.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2. 기숙사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자
3. 법정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
4. 휴학 한 자
5. <삭제 2020.10.08>
6. 전 학기 입사하였던 자 중 중도퇴사(입대, 질병, 취업 사유는 제외) 또는 별점 10점 이상인 자
7. 그 밖에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한 자

제18조(징계) 사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생활수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. <개정 2020.10.08>

1. 생활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

	규정	문서번호	TWP-C108
		제정일자	2008. 06. 01.
	기숙사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25. 09. 29.
		개정번호	5
		페이지	6/8

2. 이 규정 및 생활수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행위라 하더라도 기숙사의 질서유지에 부적

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때

제19조(퇴사) ① 사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기 중에는 퇴사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10.08.>

② 외국인 유학생은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국제교류원장의 확인 후 관장의 허가를 받아 퇴사 할 수 있다. <신설 2024.06.10.>

③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사처분 한다.

1. 생활수칙을 위반하였거나 기숙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.

2.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

3. 납부금을 체납한 자

4. 그 밖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<개정 2020.10.08>

④ 사생의 퇴사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사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0.10.08>

제20조(기숙사비 및 퇴사 시 환불) ① 입사 시 소정의 기숙사비와 보증금을 납부하며 퇴사 시 보증금은 반환한다. <개정 2020.10.08>

② 중도 입사비 및 퇴사비는 각 잔여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정산하며 중도퇴사자는 환불금액에서 25%의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한다. 다만, 잔여일수가 3주일 이내인 경우 환불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10.08., 2024.06.10.>

③ 제19조에 따라 퇴사조치되는 자는 보증금의 잔여분만 지급한다.

④ 입대 및 질병, 취업에 의한 중도퇴사 시 위약금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. <개정 2020.10.08>

제21조(외박) ① 외박신고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·대처하기 위함이므로 사생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외박은 공박, 휴박, 평박으로 구분되며,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 한다. <개정 2020.10.08., 2025.09.29>

② 공박은 학과 등 공식 일정 참가로 귀사하지 않을 경우에 외박 신청을 하며, 외박 일 전까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사감실로 제출하여야 공박 승인을 얻을 수 있다. <개정 2020.10.08>

③ 휴박은 주말 등 법정 공휴일에 귀사하지 않을 경우 외박 신청을 하며, 주말 휴박은 ‘목·금·토·일’을 말한다. <개정 2025.09.29>

	규정	문서번호	TWP-C108
		제정일자	2008. 06. 01.
	기숙사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25. 09. 29.
		개정번호	5
		페이지	7/8

④ 공박과 휴박을 제외한 날에 귀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박으로 외박신고를 한다.

제22조(분실 및 재해예방) ①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물품을 사전에 잘 보관하여야 하며, 분실 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.

② 사생은 항상 건물내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의하여야 한다.

③ 화재예방을 위해 입사 시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반입을 금한다.

1. 금지용품

가. 취사도구 (전기포트, 전기밥솥, 전자렌지, 냉장고, 휴대용 버너, 전기레인지, 에어프라이어 (오븐), 전기그릴 등 포함) <개정 2025.09.29>

나. 전열제품 (다리미, 전기장판, 전기온풍기, 스토브 등 포함) <개정 2025.09.29>

2. 허가용품 : 전기면도기, 헤어드라이기, 컴퓨터 기기, 충전기, 스탠드 <개정 2020.10.08>

제23조(비품 및 시설물 사용) ① 각 실의 비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사감 또는 부사감에게 보고한 후 수리 또는 교환할 수 있으며, 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0.08>

② 기숙사 벽에 못을 박거나 규정된 이외의 시설을 할 수 없으며, 공용물의 파손, 분실 시에는 개인이 변상한다.

제6장 사생자치회

제24조(구성) 기숙사에는 사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내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또는 사감의 승인을 받아 사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0.10.08>

제25조(의무) 사생은 학문탐구에 전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획하고 실천할 의무가 있다.

1. 자율점호 및 면학 분위기에 관한 사항
2. 사내생활의 질서유지 및 사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
3. 사생회 행사에 관한 사항
4. 사생회비 책정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 <개정 2020.10.08>

부 칙

	규정 기숙사 운영 규정	문서번호	TWP-C108
		제정일자	2008. 06. 01.
		개정일자	2025. 09. 29.
		개정번호	5
		페이지	8/8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